

감사보고서

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귀중

본인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규약 제30조 제4항에 의거하여
당기 사업연도(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)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, 각종
위원회 운영 사항,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이사회 개최 및 결과 등과 재정 및 재산상황에
대해 감사하였습니다.

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에서 진행한 행정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
감사하였습니다. 또한, 행정절차에 대한 검증을 정관 및 각종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.

본 감사인의 감사 결과 의견은 사무처 업무처리와 각 위원회의 활동들이 규정에 의거하여 잘 진행되었으며, 특히 전문체육위원회와 심판위원회, 상벌위원회 등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음은 물론이고 수차례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또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운영 또는 참가에 있어서도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됨에,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아낌없이 성원을 바랍니다. 다만 선수위원회가 개최 않음에 대해 2024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.

2024년 1월 17일

행정 감사 강 현석 (인)

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(2024년 1월 17일)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.
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
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,
이로 인하여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.

감사보고서

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귀중

본 감사는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당기 사업연도(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)의 사업결산을 감사하였습니다.

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에 규약 제30조 제4항에 의거하여 “고유목적 보조사업비 지출”을 제외한 “사무국 자부담”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.

본 감사인의 감사결과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,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업무처리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.

2024년 1월 22 일

회계 감사 최 정 길 (인)

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(2024년 1월 22일)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.
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
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,
이로 인하여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.